

##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0월 26일 이영우의원외 2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11월 1일
- 다. 상 정 일 자 : 2004년 11월 5일
- 라. 의 결 일 자 : 2004년 11월 9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이 2001년 7월 시행되고 아울러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용 “전자직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에 부응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김포시의회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등에관한법률 및 사무관리규정에서 전자문서가 기존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 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사용중에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직인을 조례로 명문화 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공인조례 제2조에 ④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전자문서용 “전자직인”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없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